

의안번호	2209652
의 퇴 인	이철규 의원
회 답 일	2025. 6. 5.
추계번호	25A217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7,000만원(연평균 5,400만원)으로 추계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7조)	270	—	—	—	—	270	54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고용 및 지역경제 영향을 완화하고, 사업전환, 근로자 전직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 (전력계통 영향분석 및 휴지보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 ¹⁾ 에 따른 폐지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전력계통 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 영향분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 영향분석 결과 전력수급 및 계통의 신뢰도과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계획을 승인하는 대신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석탄화력발전기에 휴지보존, 계속 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3항)	
		제3항에 따른 휴지보존, 계속 운전 등에 대한 보상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함(제4항)	

1) 안 제5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 승인 등) ① 석탄화력발전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려는 발전사업자(…)는 폐지 예정일로부터 2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일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폐지 예정인 석탄화력발전기 포함)
2.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재배치 계획
3. 대체사업 의향 또는 부지·설비 등 재활용 계획
4. 지역경제영향조사 결과
5. 주민·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폐지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7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기본계획에는 ①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계획, ②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근로자 및 지역경제 지원방향, ③석탄화력발전소 부지·설비의 재활용 및 대체산업의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²⁾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봄(제3항)	의무규정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8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이 승인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거나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및 「고용정책 기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³⁾ 및 고용위기지역⁴⁾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음(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기회발전특구⁵⁾로 우선 지정할 수 있음(제3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따른 규제자유특구⁶⁾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소재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기반시설 우선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이 실시됨
- 4)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정책 기본법」 에 따라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고용조정, 근로자의 실업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이 지원됨
- 5)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을 말하며, 해당 특구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등 세제혜택과 규제특례 등이 적용됨
- 6)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따라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하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규제에 대한 허가 필요 여부 등의 확인(규제신속확인), 새로운 제품 등의 실증을 위한 특례(실증특례) 부여, 시장 출시 목적의 혁신사업 시행에 대한 임시허가 등을 받을 수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9조 (지역활성화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평가, ②지역에 특화된 대체산업의 발굴·육성, ③창업 촉진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등을 포함한 지역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제1항) 제1항에 따른 지역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7)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 (제3항)	재량규정
	안 제11조 (자금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이외의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⁸⁾ 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2항)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이하 각 호 생략)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이하 각 호 생략)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후단 생략)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0조제1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할 시·군·구에 대한 보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할 수 있음 * 제2항⁹⁾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규정의 경우 해당 기금의 조성 재원을 고려할 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감소할 것이므로¹⁰⁾,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정수반요인에서 제외	재량규정
7	안 제12조 (조세 및 부담금 등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8	안 제13조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제2항)	재량규정

9) 안 제10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할 시·군·구에 대한 보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대할 수 있다.

10)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의 인구 감소와 경제·사회 기반 약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치되는 기금으로,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운용하고 있음. 재원은 법률에 따라 정부출연금(매년 1조원)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만으로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재정지원 용도로 사용됨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14조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사업재편 등)	국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사업재편 또는 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사업자 및 석탄화력 발전소 협력업체의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 상환 유예, 기한 연장, 이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2항)	재량규정
10	안 제15조제3항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사업 등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16조제1항 (발전인프라 재활용을 위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사업자가 부지, 향만, 계통설비 등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기존 인프라를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17조 (재생에너지 보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¹¹⁾ 에 따른 보급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권고·선언적 성격의 책무 규정으로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안 제6조 (전력계통 영향분석 및 휴지보존)	×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전력계통 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한국전력거래소 등 전문기관이 이를 대행하여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 재정지출(민간대행사업비 등)이 증가할 수 있음
		×	해당 영향분석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여도 전력수급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 ¹²⁾ 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규모는 분석 대상 발전기의 발전량 및 특성에 따른 과업 난이도와 투입 인력, 실시 시점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석탄화력발전기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휴지보존 ¹³⁾ 또는 계속 운전하게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순손실이나 기회비용을 보상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해당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휴지보존 및 계속 운영될 석탄화력발전기의 수와 설비 용량 등을 알 수 없고 현재까지 석탄화력발전소에 휴지보존 조치가 적용된 사례가 없어 보상금의 산정 기준과 지급 요건 또한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하여 휴지보존의 요건과 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하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보상금의 재원 부담 주체*에 대해서도 확정된 바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국가 또는 전력시장 내에서 해결(발전기 정산금 등)
			참고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과, 이 중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 및 전환 계획이 수립된 발전소는 각각 [참고자료 1], [참고자료 2]를 참고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참고자료 1]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 [참고자료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전환 계획
3	안 제7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	—
4	안 제8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정 등)	×	제정안의 우선 지정 근거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경우 각 지역 또는 특구의 근거 법령에 따라 보조금 및 조세·부담금 감면 등이 지원될 것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 이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분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별 특구 등의 지정 여부와 지정 개수, 특구 내 지원을 받을 기업 등의 수, 해당 기업 등에 지원될 재정사업의 종류나 재원 투입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현 시점에서 추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재정부담 증가분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 제도는 [참고자료 3] 참고 * [참고자료 3] 특별지역 및 특구 등 지원 제도 현황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12)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단서 생략)

1. "신뢰도"란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제반 설비 및 운영체계 등이 주어진 조건에서 의도된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정상상태 또는 상정고장발생 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전력수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적정성"과 예기치 못한 비정상 고장 시 계통이 붕괴되지 않고 견디어 낼 수 있는 "안전성"을 말한다.

13) 휴지보존(mothballing)은 발전 설비를 일정기간 가동 가능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급안정, 연료수급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발전설비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제도임. 해외에서는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설비 운영을 중단하되 특별한 경우 가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를 “휴지보존”으로 분류함

* 자료: 한국에너지연구원, 「석탄발전 휴지보존(cold reserve)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 2022.6.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5	안 제9조 (지역활성화 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대응기금 등을 재원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역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보조·융자 등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지역별로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의 예산 규모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안 제11조 (자금 등의 지원)		참고로, 현재 국가사업 중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은 없음. 다만,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이나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참고자료 4]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예산 지원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청남도의 사례를 보면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의 직무전환과 대체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도 관련 사업 예산(도비)은 총 8억 9,000만원임 * [참고자료 5]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관련 사업 현황
6	안 제10조제1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할 시·군·구에 대한 보조)	×	행정안전부장관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하여 교부세를 확대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지방이전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증액 교부 기준 및 금액을 알 수 없고 지방교부세 재원 내에서 자치단체별 교부액이 조정될 때 전체 지방재정 지출의 증감 방향과 규모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7	안 제12조 (조세 및 부담금 등 감면)	×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서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자를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이와 연계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 않아 새로 도입하려는 조세지원의 감면 요건과 수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재정수입 감소액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개발사업에 사용되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가액과 부과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 등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8	안 제13조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서 대채산업을 육성하는 자에게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근거 법률에 따른 경쟁 절차를 거쳤을 때 징수하였을 사용료나 매각 대금에 비해 재정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 허가할 재산의 종류와 해당 재산의 정상 대부료·사용료 수입 등을 알 수 없어 재정수입 감소분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9	안 제14조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사업재편 등)	×	국가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사업재편·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자의 업종 전환 및 경영합리화 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 재편 또는 전환 대상으로 지정될 사업자의 수와 해당 사업자가 지원받을 재정사업의 종류 및 재원 투입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 기업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 제도는 [참고자료 6] 참고 * [참고자료 6] 사업재편 기업 및 사업전환 기업 지원 제도 현황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0	안 제15조제3항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	고용노동부장관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대상으로 근로자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우선 지원하는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기존 사업의 확대 규모나 신규 추진될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만 적용되는 지원은 아니나, 고용노동부는 석탄 관련 기업을 포함하여 탄소중립·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업이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재배치 등을 위한 전환 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참고자료 7] 고용노동부 산업·일자리전환 지원 현황
11	안 제16조제1항 (발전인프라 재활용을 위한 특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기존 인프라(부지, 항만, 계통설비 등)를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발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해당 규정에 수반되는 비용은 기존 부지 및 설비를 전환 산업으로 재조성·재배치하기 위한 비용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전환 후 업종과 이에 따른 필요 설비 등을 가정할 수 있어야 하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소요 비용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12	안 제17조 (재생에너지 보급)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의 확대로 국가 재정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해당 규정으로 인한 재원의 추가 투입 여부와 규모는 정부의 예산 편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참고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관련 예산은 1,530억 6,600만원임 * [참고자료 8]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현황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 본 추계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안 제7조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므로¹⁴⁾ 해당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대상 비용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소요되는 연구용역비로 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연구용역비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타 부처가 기본계획 수립 시 수행한 연구용역의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안 제7조제3항¹⁵⁾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내용을 반영하더라도 이를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이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독자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소요 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칙¹⁶⁾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전제하고 추계기간 동안 시행당해 연도인 2026년에만 연구용역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14) 안 제7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5) 안 제7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근로자 및 지역경제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3.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설비의 재활용 및 대체산업의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6)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유사 사례로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및 타 부처가 수행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의 평균 예산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국가재정으로 2억 7,000만원(연평균 5,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표 2]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명	소관부처	실시연도	예산
제3차 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20	80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환경부	2020	460
평균			27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 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7조제1항)	270	-	-	-	-	270	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유사한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재정소요는 추계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assembly.go.kr

[참고자료 1]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단위: 용량(MW), 발전량(GWh)]

발전소명(지역)	대수	용량	호기	용량	준공	호기	용량	준공	발전량(2024)
삼천포화력(경남)	4	2,120	#3	560	'93	#5	500	'97	9,561
			#4	560	'94	#6	500	'98	
영흥화력(인천)	6	5,080	#1	800	'04	#4	870	'08	22,872
			#2	800	'04	#5	870	'14	
			#3	870	'08	#6	870	'14	
여수화력(전남)	2	669	#1	340	'16	#2	329	'11	2,794
보령화력(충남)	6	3,050	#3	550	'93	#6	500	'94	16,217
			#4	500	'93	#7	500	'08	
			#5	500	'93	#8	500	'08	
신보령화력(충남)	2	2,038	#1	1,019	'17	#2	1,019	'17	10,409
태안화력(충남)	10	6,100	#1	500	'95	#6	500	'02	24,472
			#2	500	'95	#7	500	'07	
			#3	500	'97	#8	500	'07	
			#4	500	'97	#9	1,050	'16	
			#5	500	'01	#10	1,050	'17	
하동화력(경남)	8	4,000	#1	500	'97	#5	500	'00	19,116
			#2	500	'97	#6	500	'01	
			#3	500	'98	#7	500	'05	
			#4	500	'99	#8	500	'05	
삼척그린화력(강원)	2	2,044	#1	1,022	'16	#2	1,022	'17	3,176
당진화력(충남)	10	6,040	#1	500	'99	#6	500	'06	26,338
			#2	500	'99	#7	500	'07	
			#3	500	'00	#8	500	'07	
			#4	500	'01	#9	1,020	'16	
			#5	500	'05	#10	1,020	'16	
북평화력(강원)	2	1,190	#1	595	'17	#2	595	'17	2,835
고성(경남)	2	2,080	#1	1,040	'21	#2	1,040	'21	10,579
신서천(충남)	1	1,018	#1	1,018	'21				3,861
강릉안인(강원)	2	2,080	#1	1,040	'22	#2	1,040	'23	3,296
반월열병합*(경기)	1	83	#1	83	'90				374
대구염색열병합*(대구)	1	73	#1	73	'04				0.5
SGC에너지*(전북)	1	114	#1	114	'08				664
새만금열병합*(전북)	2	303	#1	152	'15	#2	152	'15	2,340
금호여수열병합*(전남)	2	264	#1	119	'09	#2	145	'16	1,664
여수열병합*(전남)	1	48	#1	48	'10				301
구미열병합*(경북)	1	97	#1	97	'91				567
부산염색열병합*(부산)	1	19	#1	19	'93				12
김천열병합*(경북)	1	59	#1	59	'13				384
전북집단에너지*(전북)	1	19	#1	21	'92				107
상공에너지*(전북)	1	10	#1	10	'12				42
포천그린에너지*(경기)	1	170	#1	170	'18				1,313
동해화력(무)(강원)	2	400	#1	200	'98	#2	200	'99	1,991
삼척화력(강원)	1	1,050	#1	1,050	'24				4,225

주: 1. “*” 표시된 발전소는 발전공기업 5개사가 운영하는 발전소가 아닌 비중앙급전(14대/1,259.2MW) 민자 발전소로, 제정안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제2조에 따른 발전설비 집계성 미충족)

2. (무)는 무연탄(2대/400MW), 삼척#2 시운전 발전량 포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자료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전환 계획

연도	발전기(대체부지)		비고
2025	태안#1(구미)	1기	11차 전기본 기준 (LNG전환)
2026	하동#1(안동), 보령#5(보령), 태안#2(공주)	3기	
2027	삼천포#3,4(고성), 보령#6(함안), 하동#2,3(하동)	5기	
2028	삼천포#5(미정), 태안#3(여수), 하동#4(미정)	3기	
2029	동해#1,2(미정), 삼천포#6(미정), 태안#4(미정), 당진#1,2(여수)	6기	
2030	당진#3,4(용인)	2기	
2031	하동#5,6(용인)	2기	
2032	태안#5,6(용인)	2기	
2033	—	—	
2034	영흥#1,2(미정)	2기	
2035	—	—	11차 전기본 기준 (무탄소전환)
2036	당진#5,6(미정)	3기	
2037	당진#7,8(곡성양수, 미정), 태안#7,8(미정)	4기	
2038	보령#3,4,7,8(미정), 영흥#3(금산양수)	5기	

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자료 3] 특별지역 및 특구 등 지원 제도 현황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①보조율 우대*, ②의무투자 요건 완화(대기업 300억→150억), ③타당성평가 기준점수 완화(60점→50점), ④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기준 완화(30명→10명) * (대기업) 설비 3~8% → 11% (중견기업) 입지 10~20% → 25%, 설비 5~11% → 19% (중소기업) 입지 9~40% → 50%, 설비 7~14% → 24%
② 정책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정책자금 지원 – 산업위기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①경영애로 사유 발생 인정, ②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제외 * (중소기업)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 또는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 (소상공인)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 10% 이상 감소 – 중소기업 : 한도 10억원, 5년(거치2년), 중진공 정책자금 금리+0.5%p, - 소상공인 : 한도 7천만원, 5년(거치2년), 소진공 정책자금 금리
③ 보통교부세	• 지자체 재정수요금액에 산업위기지역 시책수요* 금액을 가산 * 동종 지자체(광역·기초)별 1인당 일반재원(지방세, 세외수입 등) x 생산가능 인구 x 120%
④ 법인세·소득세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⑤ 과세 특례	• 1인당 임금총액 감소(예 : 근로시간 단축, 상여금 축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수와 근로자 시간당 임금을 축소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총액 감소분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소득세액에서 공제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중견기업도 동 특례 대상에 포함
⑥ 국세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 납부기한 연장(2년),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기간 연장(2년)
⑦ 관세조사	• 중소기업 정기 관세조사(4년 주기) 유예(1년), 관세 납부기한 연장(15일→1년)·분납 허용(최대 1년 범위 내) 등 관세청 세정지원
⑧ 공유수면 점·사용료	• 해수부 및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해 징수하는 점·사용료 50% 감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위기지역 지원 내용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휴업· 휴직)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3/4)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요건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3개월)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1개월)
직업훈련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 지원 단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률 15~55%	- 5년간 훈련비 5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률 0~20%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제1호만 충족해도 가능
	생계비 대부한도	1명당 1천만원		1명당 2천만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채납시 연체금 징수 채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6개월) 채납시 연체금 미부과 채납처분 집행유예 ○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채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3개월) 채납처분 집행유예 ○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인당 3만원)		면제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소득요건 면제
생활안정 자금융자	소득요건	(생활안정자금) 3인가구 중위소득 1/2 이하 (‘25년 월 252만 원)		(생활안정자금) 4인가구 중위소득 1/2 이하 (‘25년 월 305만 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총 2,000만 원(2종류 이상 융자 시)		총 3,000만 원(2종류 이상 융자 시)
채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최대 6년(거치 1년~2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1천만원		2천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 용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1인 이상 기업도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각 부처 운영 12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1년간 월임금 50%(대규모기업 1/3)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기회발전특구 지원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❶ 소득·법인세	· 수도권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내 취득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5년 100% + 2년 50% 감면)
❷ 취득·재산세	· 수도권에서 특구(비수도권)로 기업 이전 시 - 취득세 100%(조례 50%포함) 감면,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감면
	· 특구 내 창업 시 - (비수도권) 취득세 100%(조례 50%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3년 100% + 2년 50% 감면
	· 공장 신·증설 시 - (비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5년 35% 감면
❸ 상속세	·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❹ 이자·배당소득세	·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일정 기간(10년) 이상 투자 시 9% 분리과세
❺ 양도소득세	·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 취득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❻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5%p) 가산
❼ 공동 직장어린이집	·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2024.8.28.)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세 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규투자 지속 유치 중”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규제자유특구 지원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① 메뉴판식 규제특례		· 기존 법령에 대한 규제특례를 발굴하여 지역특구법상 메뉴판식으로 열거하고 지역이 필요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 * 「지역특구법」 제2장제2절 및 제3장제3절
②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i)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ii)그 적용이 맞지 않거나, (iii)불가능한 경우 → 시장에서 테스트 허용 * 「지역특구법」 제86조
	임시허가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i)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ii)그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 → 시장 출시 허용과 동시에 법령개정 착수 * 「지역특구법」 제90조
	신속확인	· 규제의 유무가 불분명할 때 신청 →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회신하고, 만약 미회신시에는 ‘규제없음’으로 간주(시장출시 가능) * 「지역특구법」 제85조
③ 조세 및 부담금		· 부처협의를 통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가능 <부담금> 1. 개발부담금 2. 농지보전부담금 3.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대체초지조성비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생태계보전부담금 7.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8.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 「지역특구법」 제96조
④ 재정지원		· 부처협의를 통해 예산 범위 내 재정지원 가능 * 「지역특구법」 제97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자료 4]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예산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연번	발전원	발전소	시·도	지원금(2025 예산 기준)
기본 지 원 사 업	1	석탄(유연탄)	태안발전본부	충남	4,810
	2	석탄(유연탄)	당진화력본부	충남	4,622
	3	석탄(유연탄)	영흥화력본부	인천	3,780
	4	석탄(유연탄)	하동화력본부	경남	2,892
	5	석탄(유연탄)	보령화력본부	충남	2,885
	6	석탄(유연탄)	고성하이발전소	경남	2,204
	7	석탄(유연탄)	신보령화력발전소	충남	1,989
	8	석탄(유연탄)	삼천포화력본부	경남	1,911
	9	석탄(유연탄)	삼척발전본부	강원	1,492
	10	석탄(유연탄)	삼척블루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강원	1,658
	11	석탄(유연탄)	강릉안인화력1,2호기	강원	1,916
	12	석탄(유연탄)	북평화력발전소	강원	1,024
	13	석탄(유연탄)	신서천화력	충남	600
	14	석탄(유연탄)	여수화력발전처	전남	506
	15	석탄(유연탄)	SGC에너지	전북	516
	16	석탄(유연탄)	OCI SE 새만금열병합발전	전북	385
	17	석탄(유연탄)	GS포천그린에너지	경기	208
	18	석탄(유연탄)	구미발전소	경북	96
	19	석탄(유연탄)	반월발전소	경기	66
	20	석탄(유연탄)	김천열병합발전소	경북	57
	21	석탄(유연탄)	부산염색열병합	부산	30
	22	석탄(유연탄)	전북집단에너지	전북	30
	23	석탄(무연탄)	동해화력발전처	강원	504
소계					34,181
특별 지 원 사 업	1	석탄(유연탄)	고성하이발전소	경남	5,127
	2	석탄(유연탄)	삼척블루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강원	3,240
	3	석탄(유연탄)	강릉안인화력1,2호기	강원	1,799
	4	석탄(유연탄)	신서천화력	충남	-
소계					10,166
합계					44,347

주: 1. 시·도 구분은 발전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2.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¹⁷⁾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사업 예산을 편성함(재원: 전력산업기반기금)

- 기본지원사업(5451-301): 운영중 또는 건설중인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추정)발전량에 발전원별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2025년 예산 기준 총 6개 발전원, 845개 발전소)
- 특별지원사업(5451-302): 건설중 또는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발전소 건설비의 1.5% 범위 내 지원(2025년 예산 기준 총 53개 발전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5]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연도	시군명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2024	보령	보령 수소차 특별보급 사업	250	‘24년 수소차 구입자 500만원 추가 지원(50대)
	보령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지역연계육성계획 수립	200	보령 1,2호기 석탄화력 폐지 영향 분석 등 연구용역
	보령	에너지 신산업 지원센터 설치	1,428	기업·연구·행정 간 협력 비즈니스 및 창업·교육 지원 공간 마련
	보령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구축	120	에너지 전환 포럼 운영, 전문 활동가 양성 등
	당진	친환경 버스정류소 표지판 구축	594	노후 표지판 태양광 LED 교체
	태안	K-마린 노르딕워킹 프로그램 개발	345	노르딕워킹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태안	해상풍력단지 환경영향조사	699	풍력단지 해양환경영향 조사 및 이익 공유모델개발 등
	태안	석탄발전 노동자 역량강화 지원	150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 직무역량 교육, 직무전환 지원
	태안	착한가격업소 경쟁력 강화사업	140	착한가격업소 친환경 제품 지원, 에너지 고효율 시설 교체 등 환경개선 지원
소계			3,926	—
2025	당진	에너지전환 지역영향조사	190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피해 데이터 조사, 분석 및 지원방안 도출
	당진	석탄발전 관계자 재취업 교육	230	한국동부발전·협력사 임직원 및 지역 주민 대상 취업컨설팅 및 재취업 교육
	태안	에너지전환 지역영향조사	190	태안군 25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피해 데이터 조사, 분석 및 지원방안
	태안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주민교육 홍보	30	에너지 전환 읍면 순회 교육 및 홍보물 제작
	태안	석탄발전 노동자 역량강화 지원	150	석탄발전 노동자 기술교육, 직무전환 상담 및 교육비 지원
	태안	태안군 이원산업단지조성 사전타당성 조사	100	산업단지 신규 조성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소계			890	—

자료: 충청남도

[참고자료 6] 사업재편 기업 및 사업전환 기업 지원 제도 현황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 지원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❶ R&D	· 정부 R&D사업 우대가점 부여, 중소기업 과제수행 한도(중소3, 중견5)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 기술료 납부유예 등
❷ 금융	· (우대지원) 산은·기은, 기보·신보 등 융자·보증 시 금리·요율 등 우대 * (산은) 최대 △1.0%p, (기은) 최대 △0.5%p, (기보) △0.2%p, (신보) 보증비율 95% 적용 및 보증료율 최대 0.5%p 차감 등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 - 대출·보증 우대, 경영 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 민간자금 유치 혜택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기존 사업장 축소불가 → 축소가능)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지원 비율 2%p 가산 지원 · 자산매각 지원(S&LB 방식으로 캠퍼에서 유동성 공급, '23년 500억 규모)
❸ 컨설팅	·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 -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센티브 활용 애로, 직무전환·인력 재배치 등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 매칭을 통한 문제 진단 및 해결 * (지원규모) 기업별 천만원 이내
❹ 교육	· 사업재편 아카데미 운영으로 인력교육 제공
❺ 세제	· (법인세) -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시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 이연 등 - 이월결손금 100% 공제(대기업도 적용) · (등록면허세) 합병·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❻ 입지특례	·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 →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시 적용
❼ 고용안정	·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 사업재편 노동전환 컨설팅 및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❽ 정부사업 우대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신청시 가점 우대 (3점)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타당성 평가 시 가점 우대(2점)
❾ 상법 절차 간소화	· (소규모분할) 자산규모 10% 이하 사업부문 물적분할시 절차 완화 * 이사회 결의로 갈음(주주총회 생략) · (주총 소집기간 단축) 7영업일 (상법: 2주) · (채권자 보호절차 단축) 10일 (상법: 1개월) ·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10일 (상법: 20일) · (회사: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상장회사) 3개월 (상법: 1개월), (비상장회사) 6개월 (상법: 2개월)
❿ 공정거래법 규제유예	·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 3년(공정거래법: 1~2년) · 상호·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1년(공정거래법: 6개월) · 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 3년(공정거래법: 2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사업재편 기업 종합지원 방안 가이드(202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승인기업 지원 내용(연계지원)

구 분		내 용	담 당
정책자금		■ 사업전환자금 융자(기업당 최대 100억원, 운전 최대 5억원) － 지원대상 : 사업전환승인기업 － 대출기간 : 시설 10년(거치 5년이내), 운전 6년(거치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정책보증		■ 사업전환기업 우대보증(보증비율 90%, 보증료 0.2%p 감면) － 지원대상 : 사업전환 승인기업(중기부), 사업재편 승인기업(산업부), 신산업 진출기업 － 지원한도 : 최대 100억원(운전 최대 30억원) － 우대내용 : 보증비율 90%, 보증료 0.2%p 감면	기술보증기금
투자		■ 재도약펀드(사업전환·재편 승인기업 투자대상 포함) － 지원내용 :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한국벤처투자
R&D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R&D) 기술료 납부 유예(2년간), 구조혁신R&D 사업연계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정부 사업	병역 지정 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4점) - 사업전환 우수기업 대상 * 일자리창출 40점, 수출 10점, 경영 및 기술혁신 25점(사업전환 승인기업 4점), 산학협약 15점, 균형성장 10점	병무청
상법 특례		■ 비상장기업의 합병절차, 주식교환, 영업양수도 등 상법상 절차 간소화(상장사 제외) *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장	—
세제 특례		■ 산업위기지역에서 사업전환 승인일로부터(∼2025.12.31) 3년 이내에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전환사업용 부동산의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행보증연계		■ 서울보증보험 계약·선금금·인허가 관련 이행보증지원 (대출후 2년 내, 5억 한도)	SGI 서울보증보험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		■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전환 관련 기업에 재직자의 직무전환 및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컨설팅 제공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금		■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 직무전환·전직지원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요(고용센터)	관할 고용지원센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자료 7] 고용노동부 산업·일자리전환 지원 현황

1.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사업 개요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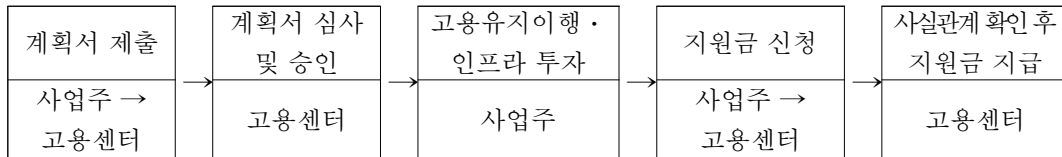
-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체, 석탄, 철강,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등
- **(지원요건)** 최소 임차금액 100만원 이상, 감원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
- **(예산)** ('24년) 2,500백만원 → ('25년) 750백만원('24년 승인 기업 계속지원분)

□ 지원내용

- **(지원범위)** 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 임차비 및 기숙사(월세)·통근버스 임차비 등 지원
- **(지원금액)** 최대 2억원 한도 사업주 투자의 50%, 1년 지원
* 단,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시설은 80%까지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절차

- 고용센터에서 제출하여 승인받은 계획서에 따라 사업주가 인프라 투자 후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2.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 사업 개요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직무 재배치 등을 위해 재배치(전환) 훈련 및 전직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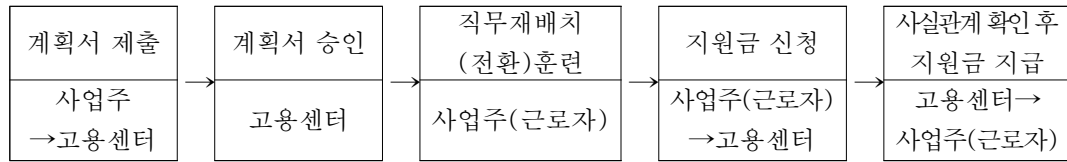
-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지원요건)**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재배치 계획 수립 후 직무를 변경하여 재배치 예정인 근로자에게 직무훈련을 제공하거나 이·전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지원
- **(예산)** ('24년) 3,742백만원 → ('25년) 3,742백만원
 - 훈련비: 1,862백만원('25년 신규 660명×2.1백만원+'24년 계속 476백만원)
 - 훈련장려금: 1,680백만원(560명×2백만원×1.5개월)
 - 운영비: 200백만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직무전환(전직지원서비스) 훈련비용 실비지원(인당 최대 300만원 내 12개월 한도), 사업주 훈련장려금[월 최대 200만원(인당 1일 10만원), 총 600만원 내 12개월 한도] 지원

□ 지원절차

- 고용센터에 사업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은 후 직무전환 훈련 등을 이행한 후 지원금 신청·지급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참고자료 8]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내용	예산액 (2025 추정)	시행방법
사업명(기금, 코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전력산업기반기금, 5202-303)	(156,373) ¹⁾	보조, 출연
사업목적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	—	—
사업 유 형 2)	주택지원	단독·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원 설치 지원	22,154	민간보조 (설비 설치자)
	건물지원	일반건물, 상업 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고, 기술개발·실증을 거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범보급 지원	32,093	
	융복합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간 융합 또는 지역 마을단위의 구역복합 보급사업 지원	96,507	
	사후관리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후 A/S,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지원	2,312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출연
	합계		153,066	—

주: 1)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 총액

2) 해당 세부사업의 일부 내역사업은 안 제17조의 취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하고 작성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